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0년 4월 14일

우리는 첨부된 서울특별시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층 706호  
대한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중순

